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확인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인터넷 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2you.com) 확인서 발급(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은 제외),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인터넷 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2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신청시는 제출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원	본인	발급일 기준일 : 2018년 10월 18일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기준표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만 30세이상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여성가족부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배우자)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입양의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선정기준표	-	건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만 18세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모집공고 기준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만 인증)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 (2017.01.01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요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회사 직인 날인 필요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건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18)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것만 인정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청으로 인한 당청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관련 제출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 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 서)	·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 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 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 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소득입증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0.18) 이후 발급된 원본 서류만 인정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72호(2018.05.08.))”에 따름.